



# 캐나다의 보험계약 인수 시 유전자 정보 활용 금지 관련 논란

정인영 연구원

역향

캐나다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전자차별 금지와 예방을 위한 법안(Bill S-201)」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보험업계는 역선택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를 우려하여 유전자 정보를 근거로 한 보험료 차등 및 인수 거절은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임. 반면, 현재 건강한 사람이 특정 질환에 걸릴 가능성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 금지해야 한다는 캐나다유전자공정성 연합 등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음.

- 캐나다는 G7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유전자차별<sup>1)</sup>에 관한 규제가 없는 국가인데,<sup>2)</sup>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전자차별 금지와 예방을 위한 법안(Bill S-201)」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2013년 10월 상원위원회에서 발의된 Bill S-201은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계약의 성립과 유지 등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sup>3)</sup>
  - 논의의 쟁점은 보험회사가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와 이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근거한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임.
- 보험업계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 문제 해소를 위해 청약자에게 유전자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와 이를 근거로 한 보험료 차등이나 계약인수 거절은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임.
  - 특정 질병에 대한 유전적 소인<sup>4)</sup>을 가진 사람의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고지 없이 보험에 가입하고

1) 캐나다유전자공정성연합(CCGF)은 ‘유전자차별(Genetic Discrimination)’을 질병이나 장애로 발전할 리스크를 유발하거나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근거로 한 불공정한 대우로 정의함.  
 2) 캐나다는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에 대해 불공정한 차별을 최소화하고 부적절한 접근을 막기 위해 인권법, 보험법, 사생활보호법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현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인수 시 가입자에게 유전자검사 시행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가입자가 이미 시행한 검사결과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차등 책정하거나 가입 거절이 가능함.  
 3) 단, 의사나 약사 등이 건강관리 목적으로 요구하거나 의학, 약학, 과학 분야 연구자가 연구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임.  
 4) 유전적 소인(genetic predisposition)이란 유전적으로 질병에 걸리기 쉬운 경향, 질병에 대한 감수성을 의미함.

자 하는 유인이 증대되어 역선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인수하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확대되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캐나다게리사협회(CIA)는 법안 통과로 인해 보험회사의 유전자 정보 접근이 불가할 경우 역선택 발생으로 CI보험의 지급청구가 26%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sup>5)</sup>

■ 반면, 캐나다유전자공정성연합(CCGF: Canadian Coalition of Genetic Fairness) 등은 유전자 정보에 따라 향후 특정 질병을 보유할 확률이 높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이 보험가입 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인권침해, 낙인화 등의 가능성이 있어 보험회사가 이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밝힘.

- 유전자 정보로 인한 보험료 차등 및 가입 거절 등이 합법화될 경우 그로 인한 차별을 우려하여 특정 질병에 대한 유전적 소인이 있더라도 유전자검사 자체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유전형질과 질병 발생 간 일관된 패턴을 관찰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족력 등을 근거로 보험가입이 거절<sup>6)</sup>되거나 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최근 캐나다생명보험협회(CLHIA: Canadian Life and Health Insurance Association)는 25만 달러 미만의 보험계약 인수 시 보험회사가 청약자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함.<sup>7)</sup>

- 이는 2018년 1월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되며, 전체 계약의 약 85%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의 제정을 우려한 선제조치로 풀이하며 법안 통과 시 불필요한 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유전자검사는 질병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통해 개인맞춤형 의료를 확대하고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예방 확률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예측의 정확성, 활용의 윤리성 및 안전성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법안의 통과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험가입 시 유전자검사 시행 또는 기존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kiqi**

5) 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2016. 1), “Genetic Testing Model for CI: If Underwriters of Individual Critical Illness Insurance Had No Access to Known Results of Genetic Tests”.

6)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정맥사망증후군(SADS)을 진단받은 144명 가운데 약 56%가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고 응답함; American Heart Association(2017. 1. 24), “Genetic Insurance Discrimination in Sudden Arrhythmia Death Syndromes”, *Circulation: Cardiovascular Genetics*, Volume 10, Issue 1.

7) CLHIA(2017. 1. 11), “Canada’s Life and Health Insurers Announce Commitment on Use of Genetic Testing Information”.